

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기관·단체명		
	대표자	생년월일	
	소재지(주소)	전화번호	

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정관 2. 사업계획서 3. 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.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·사업추진 실적(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처리절차		

